

광주지방법원 2024. 6. 5 선고 2023가단56500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1. C

2. D

3. E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은숙

변 론 종 결 2024. 5. 8.

판 결 선 고 2024. 6. 5.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들과 소외 F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/16 지분에 관하여 2022. 10. 11. 체결된

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/16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2023. 1. 2. 접수 제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F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9716호 2019. 4. 30.자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금 106,660,975원 및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.

나. F의 부친인 망 G(이하 ‘망인’이라고 한다)이 2022. 10. 11. 사망하였고, 그 공동상속인으로는 피고 C, E 및 대습상속인인 피고 D 등이 있다.

다. 피고들은 망인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고 한다) 중 각 3/4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이 각 1/4 지분씩 공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(이하 ‘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’라고 한다)를 하였고, 2023. 1. 2.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라.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무렵 F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 주장의 요지

원고는,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 F가 공동상속인인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바,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
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.

나. 구체적 판단

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‘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’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(대법원 2011. 6. 9.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),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, F는 2022. 11. 17. 광주가정법원 2022느단4155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같은 달 24. 그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,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, F는 위 상속포기 수리심판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라 할 것이고,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당사자도 될 수 없다.

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.

판사 김혜선

별지